

<검토보고서>

2003. 11.

-제83회 충주시의회(임시회)-

# 충주시제83회 임시회 평의회(제83회 임시회) 안건조례안

충 주 시 의 회

총 무 위 원 회

## 【검 토 보 고 서】

-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- 동 개정조례안은 2003. 11.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의안번호 제454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### 1. 제안이유

-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 
도모하기 위함

### 2. 주요골자

- 제증명등의 수수료 징수내용중 입찰참가신청, 수의계약신청  
또는 견적(1,000만원 이상)시 납부하던 입찰참가수수료  
10,000원의 징수사항에 대하여 삭제

### 3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28조, 제130조

### 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제도 실시 이후 종전의 입찰참가 수수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현행 전자입찰 제도하에서는 입찰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
-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입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하여금 전자입찰 참가에 따른 입찰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 조정하도록 입찰수수료 징수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구한바 있음
- 입찰방식의 전환(서면입찰⇒전자입찰)과 관련하여 현행 입찰참가수수료를 삭제하여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입찰참가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드립니다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